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에 법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북한 위성 영상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나군 2명)을 각각 증원하고,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직업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통일부 책임운영기관인 통일교육원에 공공기관 통일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10명(5급 3명, 6급 2명”을 “12명(5급 4명, 6급 3명”으로 한다.

별표 1 총계 “243”을 “247”로 하고, 일반직 계 “239”를 “24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68”을 “69”로 하고, 행정주사 “23”을 “24”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북한방송청취 담당) 2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위성영상분석 담당) 2”를 신설한다.

별표 1의2 총계 “243”을 “247”로 하고, 일반직 계 “239”를 “24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64”를 “65”로 하고, 행정주사 “21”을 “22”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북한방송청취 담당) 2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위성영상분석 담당) 2”를 신설한다.

별표 4 행정주사보 “12”를 “13”으로 한다.

별표 7의5 3급 또는 4급 이하 “54”를 “55”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 (4·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u>10명</u> (5급 3명,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 ----- ----- <u>12</u> <u>명</u> (5급 4명, 6급 3명)-----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43</u>	<u>247</u>	+4
·	·	·	
·	·	·	
일반직 계	<u>239</u>	<u>243</u>	+4
·	·	·	
·	·	·	
행정사무관	<u>68</u>	<u>69</u>	+1
·	·	·	
·	·	·	
행정주사	<u>23</u>	<u>24</u>	+1
·	·	·	
·	·	·	
전문경력관	2		
나군(북한방송청취 담당)			
<u>전문경력관</u>	<u><신 설></u>	<u>2</u>	+2
<u>나군(위성영상분석 담당)</u>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43</u>	<u>247</u>	+4
·	·	·	
·	·	·	
일반직 계	<u>239</u>	<u>243</u>	+4
·	·	·	
·	·	·	
행정사무관	<u>64</u>	<u>65</u>	+1
·	·	·	
·	·	·	
행정주사	<u>21</u>	<u>22</u>	+1
·	·	·	
·	·	·	
전문경력관	2		
나군(북한방송청취 담당)			
전문경력관			
<u>나군(위성영상분석 담당)</u>	<u><신 설></u>	<u>2</u>	+2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행정주사보	.		.		.	+1	
	.		.		.		
			<u>12</u>		<u>13</u>		
	.		.		.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5]

통일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4</u>	<u>55</u>	
•	•	•	
•	•	•	